

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73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'95. 9.

제출자 : 사 천 시 장

1. 개정이유

지방행정 당면시책과 시정발전 자문기능을 수행할 정책보좌관의 정원을 신설하기 위함.

2. 법적근거

정책보좌관 정원승인서 (도 지방 12200-1187, '95. 8. 28)

3. 주요골자

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중 시본청 정원 2명 증원(안 제2조 제1호.)

4. 개정규정안 : 따로붙임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
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제1호 시본청 "461"명을 "463"명으로 한다.

부

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95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.

②(한시정원) 이 조례에 의한 시본청 정원중 2명은 정년을 기한으로 한 정책보좌관의
개인별 한시정원으로, 존속기한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